



제429회국회(정기회)
제8차 국방위원회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민원인 등에 의한 사회복지무요원 괴롭힘 방지 조치〉

■ 허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2263호)

2025. 11.

국 방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서 덕 교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허영의원 등 11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8. 20.
3. 회부연월일 : 2025. 8. 2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지복무요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 사회복지복무요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.

그러나 가해자가 복무기관 소속이 아닐 경우 사회복지복무요원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복무기관 소속 외에 제3자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지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,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지복무요원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7, 제95조제3항제1호의2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 등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요원의 건강장애 발생(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) 시 근무장소의 변경, 휴가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, 사회복지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,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복무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7, 제95조 제3항제1호의2 신설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31조의7(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등) ① 복무기관의 장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등 복무기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 민원인 등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걱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(이하 이 조에서 “폭언등”이라 한다)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

현행	개정안
제95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(생략) <신설> 2. (생략) ④ ~ ⑦ (생략)	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사회복지요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, 휴가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 사회복지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95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제31조의7제2항·제3항을 위반한 자 2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- 사회복지요원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에서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, 보건·의료, 교육·문화, 환경·안전 등 사회 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음.

<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 현황>

(‘25. 8. 31. 현재, 단위: 개)

구 분	계	국가기관	자치단체	공공단체	복지시설
2025년	12,244	1,029	804	921	9,490
2024년	11,829	1,048	793	1,004	8,984
2023년	12,115	1,072	807	1,162	9,074
2022년	12,336	1,096	850	1,314	9,076

- 개정안은 사회복지요원이 민원인 등 제3자에 의한 폭언 등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¹⁾을 감안하여,
- 제3자의 폭언·폭행 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요원에게 건강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(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) 해당 복무기관의 장이 근무장소의 변경,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,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요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.

1) 사회복지요원 2명 중 1명, 민원인에게 ‘괴롭힘 경험’(매일노동뉴스, 2025.11.11.)

□ 다만, 「병역법」 등 사회복지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
현행 법령 체계에서도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민원인 등 제3자의
폭언·폭행 행위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 등이 해당 상황에 대하여
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
살펴볼 필요가 있음.

□ 「병역법」 및 「병역법 시행령」²⁾에 따르면 사회복지무요원이 복무
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
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‘복무기관 재지정
원서’를 제출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
따라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제3자의
폭언·폭행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무
요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복무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□ 또한,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지무요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
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병가를 허가³⁾할 수 있는데,

2) 「병역법」 제32조(사회복지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) ① 사회복지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·지
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지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6.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
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

「병역법 시행령」 제65조의3(복무기관 등의 재지정) ① 사회복지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(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)에 국
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지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,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
3)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59조(사회복지무요원의 휴가)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지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민원인의 폭언·폭력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□ 한편,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63조·제64조⁴⁾ 및 「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」 제43조에 따르면 병무청장의 업무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,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제3자의 폭언·폭행으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 상담 및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여 복무분야 변경, 순환근무, 휴가 등의 조치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⁵⁾

3. 병가

가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

- 4)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63조(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·감독 범위)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다.
 1.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
 2.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-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64조(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)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5) 고충의 내용에 따라 근무지 변경 조치, 보상 및 치료 신청 절차 안내, 공무상 병가 허가, 분할복무(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개시) 제도 안내,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안내 및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.(병무청 설명)

<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 등 권익보호 관련 주요 규정 현황>

구 분		주 요 내 용
고충 처리	「병역법」 제31조의2	·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 지정 ·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관리·감독 가능
	「병역법시행령」 제63조	·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·감독
	「병역법시행령」 제64조	·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상담·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금지 · 복무기관의 장은 심사·상담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해소
복무지 조정	「병역법시행령」 제65조의3	·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질병·심신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
치료 지원	「병역법」 제75조	·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발생 시 복무기관장의 부담으로 치료
및 휴가	「병역법시행령」 제59조	·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병가 부여

□ 국방부 및 병무청은 현행 규정 하에서도 민원인 등 제3자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폭언·폭행 등 발생 시 이를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.

문 의 처

02)6788-5307